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5. 8.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2년 4월 30일

나. 발 의 자 : 신홍식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 2012년 5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166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2년 5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신홍식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되면서 효와 경로사상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효행 장려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구의 책무 및 효의 달 지정(안 제3조, 안 제4조)
- 효행교육의 장려와 효행우수자 표창(안 제5조, 안 제6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7조)
-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성)

- 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시행되고 201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효문화 진흥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권고한 바 있음.
- 나. 2012년 3월말 현재 우리구 65세 이상 인구는 44,070명으로 이중 독거 노인 현황은 9,680명(남 3,030, 여 6,650)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2010년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에서도 대상 노인 6,745명중 13.8%인 930명이 노인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어 노인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 이에 본 조례안은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임.
- 라.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조례제정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1조 ~ 제3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효행에 관한 교육을 장려하는 한편, 효행우수자를 표창 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 ~ 안 제6조).
 - 또한 효행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범위를 마련한 것은 민간단체에 의한 효행장려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안 제7조, 안 제8조).
- 마.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임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신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
----------	-----

발의연월일 : 2012년 4월 일
발 의 자 : 신흥식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되면서 효와 경로사상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효행 장려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의 책무 및 효의 달 지정(안 제3조, 안 제4조)
- 다. 효행교육의 장려와 효행우수자 표창(안 제5조, 안 제6조)
- 라.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7조)
- 마.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2012. 4.17~4.23) 결과 : 의견 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5조(효행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6조(효행 우수자 표창)

- 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② 표창 방법, 표창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효행 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 4. 그 밖에 효 의식 함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